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5일, 박해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해철의원)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한파·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의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기숙사¹⁾뿐 아니라 외국인근로

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계획 수립하지도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²⁾ 확정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주거권을 보호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한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세부사업에³⁾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내역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류관리 전반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 해당 내역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 지원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서울고등법원 2024나56742

3) 사업코드 3051-308

동부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사용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기숙사(주거시설)의 제공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시설 단속 강화가 주거시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으로도 비닐하우스 숙식시설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와 불법 건축물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률 이행과 사용자의 법률 준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법제적 측면에서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 「농지법」 제34조는 농지 전용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준 준수를 규정한 개정안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2205706호) 검토보고서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 제22조의3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세부사업 중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류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비용 1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3(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